

경운대학교 교재개발 심의 규정

제1조(목적) 교재(교안)개발의 효율 및 교과 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개발 완료된 교재 원고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재개발 심의) 교재개발 계획에 의거 개발되는 교재(교안 등) 원고는 교재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3조(교재개발심의위원회) ①교재개발 계획에 의거 개발되는 교재 원고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교재개발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위원은 교재개발에 참여한 자를 제외한 교내교수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4조(교재개발심의평가) ①교재개발심의위원회는 교재개발 계획에 의거 개발된 교재 원고를 심의 평가한다.

②심의평가 단계는 상, 중상, 중, 중하, 하로 평가하며, “중”이상 평정되어야 한다.

③위원장은 심의결과 “중”미만의 평정을 받은 교재 원고에 대하여는 재집필 및 수정을 요구한다.

④재집필 및 수정의 요구를 받은 개발 책임교수는 15일 이내에 재집필 및 수정을 하여 원고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⑤제출된 원고는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조(심의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) ①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의해 심의결과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재개발중지 및 환수) ①교재개발계획에 의거 추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재개발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1.교재개발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

2.교재개발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
3.기존 교육부 특성화 및 재정지원 사업 등 교내·외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교재내용을 원형 또는 변형하여 제출하는 경우

4.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개발 결과보고서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(표절 등)로 하였을 경우

5.기타 사유로 교재개발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제7조(교재검증비) ①교재개발 원고 심의를 위해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교재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. 외부전문가는 심의교재와 관련이 있는 타 대학 교수, 산업체인사, 교재편찬 전문가, 연구기관 실무 경력자 등으로 한다.

②교재원고를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 1인에게는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교재검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교재개발 심의회의록

일시 / 장소				
참 석 자	소 속	직 위	성 명	서명 또는 인
심 의 사 항				
기 타				

경운대학교 0000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교재개발 심의결과 보고서

기관명	경운대학교	평가	상	중상	중	중하	하
심의대상자 직·성명	직위 : 성명 :						
개발교재명							
심의 요 지							

(필요 시) 붙임 1. 교재검증결과보고서(외부) 1부.

(필요 시) 붙임 2. 중복게재(표절검사)결과 확인서 1부. 끝.

20 년 월 일

교재개발심의위원 직급 : 성명 (인)
 직급 : 성명 (인)
 직급 : 성명 (인)
 직급 : 성명 (인)
 직급 : 성명 (인)

경운대학교 0000 귀하